

5 주요예산 집행결과

5-1. 기본경비 집행현황

- 기본경비란 지방자치단체의 부서운영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경비로서 각종 사무용품 구입, 공공요금, PC 등 물품구입, 기관 및 부서 업무 추진에 따른 경비 등입니다. 우리 구의 기본경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기본경비 (B)	비율 (B/A)	비 고
합 계	492,359	2,442	0.50%	
일반운영비	492,359	1,220	0.25%	
여 비		749	0.16%	
업무추진비		315	0.06%	
직무수행경비		93	0.02%	
자산취득비		66	0.01%	

-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행정운영경비의 설정' 중 기본경비 항목
- ▶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비(201-01)+공공운영비(201-02), 여비는 국내여비(202-01)+월액여비(202-02),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203-01)+정원가산업무추진비(203-02)+부서운영업무추진비(203-04), 직무수행경비는 직책급업무수행경비(204-01), 자산취득비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405-01)

❖ 기본경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6	2017	2018	2019	2020
세출결산액	268,310	305,872	304,385	345,180	492,359
기본경비	2,492	2,474	2,791	2,820	2,442
비율	0.93%	0.81%	0.92%	0.82%	0.50%

기본경비 연도별 변화



☞ 세출결산액이 전년대비 약 43% 증가하고 기본경비가 전년 대비 약 13.4% 감소하여 기본경비 비율이 전년 대비 약 0.3% 감소했습니다.

5-2. 자치단체 청사 기준면적 초과 현황

☐ 우리 구 본청·의회청사 및 단체장 집무실의 기준면적 초과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m², '20.12.31. 현재)

본청 청사			의회청사			단체장 집무실		
기준 면적	보유 면적	초과 면적	기준 면적	보유 면적	초과 면적	기준 면적	보유 면적	초과 면적
12,020	8,155	0	1,698	1,341	0	99	97	0

* 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 94조의 3,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

5-3. 공무원 인건비 집행현황

☐ 우리 구의 2020년도 공무원 인건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인건비 (B)	비율 (B/A)	비고
합 계	492,359	59,429	12.07%	
인건비	492,359	48,263	9.80%	
직무수행경비		1,405	0.29%	
포상금		1,994	0.41%	
연금부담금 등		7,767	1.58%	

▶ 인건비는 보수 (101-01), 기타직보수 (101-02), 무기계약근로자보수(101-03), 직무수행경비는직급보조비 (204-02), 포상금은 성과상여금 (303-02), 연금부담금 등은 연금부담금 (304-01),

국민건강보험금(304-02)이 해당함

- ▶ 보수(101-01)는 기본급, 수당,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 ▶ 대상회계 : 일반회계, '20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7개 통계목)

❖ 인건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분	연도별				
	2016	2017	2018	2019	2020
세출결산액(A)	268,310	305,872	304,385	345,180	492,359
인건비(B)	46,512	49,669	52,972	55,103	59,429
인건비비율(B/A)	17.34%	16.24%	17.40%	15.96%	12.07%

인건비 연도별 변화



☞ 세출 결산액이 전년 대비 약 43% 증가하여 인건비가 전년 대비 약 8% 증가했음에도 인건비 비율이 전년대비 약 3.9% 감소했습니다.

5-4. 업무추진비 집행현황

☐ 우리 구의 업무추진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업무추진비 (B)	비율 (B/A)	비 고
합 계	492,359	308	0.06%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03-01)	492,359	163	0.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3-03)		145	0.03%	

▶ 대상회계 : 일반회계, '20년 결산결과 203-01, 203-03 집행총액

❖ 업무추진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2016	2017	2018	2019	2020
세출결산액	268,310	305,872	304,385	345,180	492,359
업무추진비	295	301	319	339	308
비율	0.11%	0.10%	0.10%	0.10%	0.06%

업무추진비 연도별 변화



☞ 세출 결산액이 전년 대비 약 43% 증가하고 업무추진비가 전년대비 31백만원 감소하여 업무추진비 비율이 전년대비 0.04% 감소했습니다.

◆ '20년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은 별지 작성하였습니다.

5-5. 국외여비 집행현황

☐ 2020년도 국외출장 및 국외여비 집행내역은 없습니다.

5-6. 지방의회경비 집행현황

☐ 우리 구의 2020년도 지방의회경비의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명, %)

세출결산액 (A)	의회경비 집행액 (B)	의회경비 비율 (B/A)	지방의원 정수 (C)	1인당 의회경비 (B/C)(천원)
492,359	390	0.08%	8	48,75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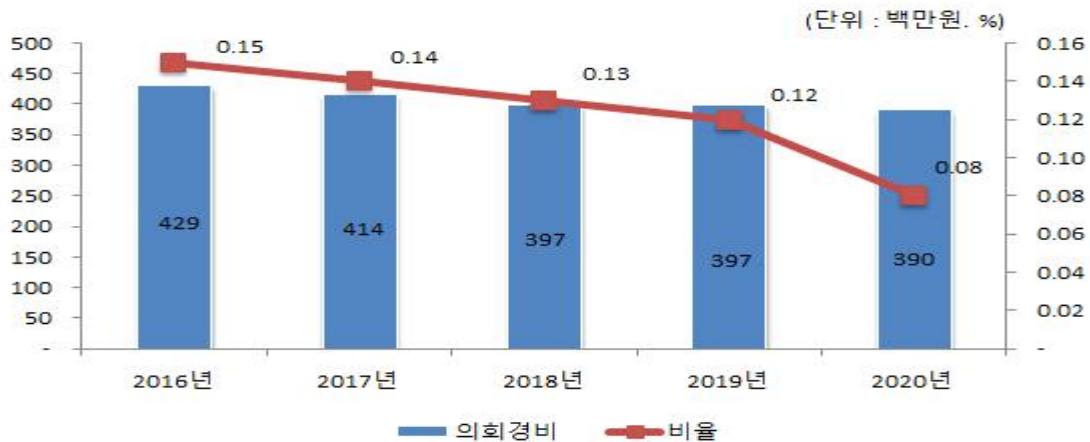
- ▶ 대상 회계 및 집행액 : 일반회계, '20년 결산결과 의회경비* 집행액
- ▶ *의회경비 : 의정활동비(205-01), 월정수당(205-02), 의원국내여비(205-03), 의원국외여비(205-04), 의정운영공통경비(205-05), 의회운영업무추진비(205-06), 의원역량개발비(민간위탁,205-08), 의원정책개발비(205-09), 의장협의체부담금(205-10), 의원국민연금부담금(205-11), 의원국민건강부담금(205-12)

❖ 의회경비 연도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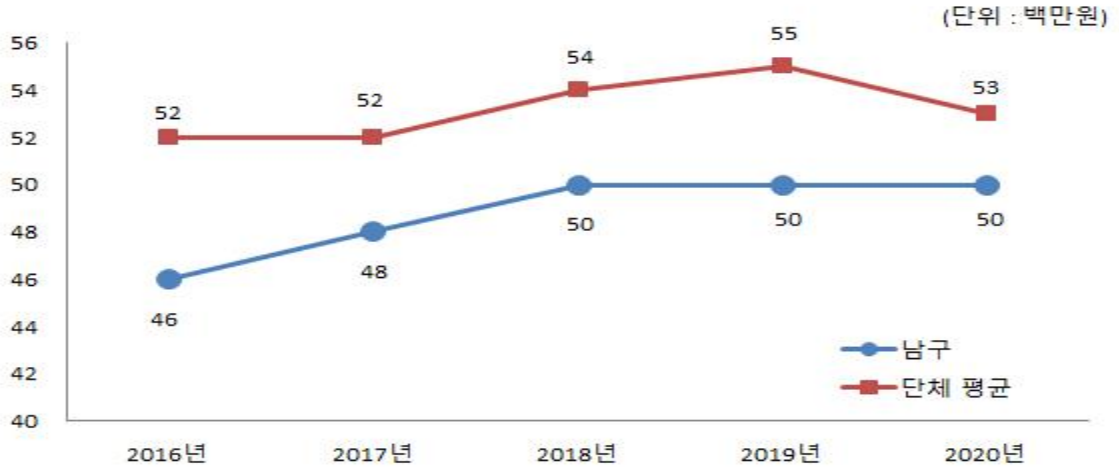
(단위 : 백만원, 명, %)

구 분	연도별				
	2016	2017	2018	2019	2020
세출결산액	268,310	305,872	304,385	345,180	492,359
의회경비	414	429	397	397	390
의원 정수	9	9	8	8	8
세출대비 의회경비 비율	0.15%	0.14%	0.13%	0.12%	0.08%
지방의원 1인당 의회경비(천원)	46,049	47,636	49,619	49,671	48,751

의회경비 연도별 집행액 및 비율 변화



의원 1인당 의회경비 연도별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세출 결산액이 전년 대비 약 43% 증가하고 의회경비가 전년 대비 1.7% 감소하였습니다.

5-7. 지방의회 국외여비 집행현황

☐ 우리 구의 2020년도 지방의회 국외여비의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명)

국외여비 집행액 (A)	지방의원 정수(명) (B)	의원 1인당 국외여비 집행액 (A/B)(천원)
0	8	0

▶ 의회비 중 국외여비 집행액, 지방의원 정수는 2020.12.31일 기준

❖ 지방의회 국외여비 세부 집행내역

▶ 우리 구의 2020년도 지방의회 국외여비 집행현황은 없습니다.

5-8.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현황

-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란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시장(도지사, 군수, 구청장)이 공무원의 근무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실시하는 공무원에 대한 복지제도의 시행경비로서, 2020년 우리 구의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상인원 (A) (명)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지급총액(B) (백만원)	1인당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기준액(C) (천원)	1인당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D=B/A) (천원)	1인당 기준액 대비 시행경비 (D/C)(%)
935	1,226	1,330	1,311	98.59

- ▶ 대상인원 : 연도말 기준 현원
- ▶ 대상회계 : 일반회계
- ▶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지급총액 : '20년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201-04) 결산액

❖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 도 별				
	2016	2017	2018	2019	2020
대상인원 (A)(명)	746	845	889	919	935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지급총액(B)(백만원)	974	1,046	1,274	1,187	1,226
1인당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기준액(C)(천원)	1,492	1,492	1,290	1,320	1,330
1인당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D)(천원)	1,306	1,238	1,433	1,292	1,311
1인당 기준액 대비 시행경비(D/C)(%)	87.55	82.97	111.11	97.84	98.59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연도별 추이



☞ '20년 맞춤형 복지제도 1인당 시행경비 기준액 대비 시행경비가 전년대비 0.75%증가하고 대상인원도 전년 대비 1,7% 증가하여 '20년 맞춤형 복지비 시행경비 총액이 전년 대비 3.3% 증가하였습니다.

5-9. 연말지출 비율

☐ 우리 구에서 2020년 11월~12월 중에 지출(원인행위)한 연말지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세출결산액 (A)	연말 (11~12월) 지출원인행위액 (B)	비율 (B/A)
계	18,556	8,411	45.33%
시설비 (401-01)	18,452	8,341	45.20%
감리비 (401-02)	86	65	74.88%
시설부대비 (401-03)	18	6	31.02%

- ▶ 대상회계 : 일반회계, 분청분만 해당(직속기관, 사업소 등은 제외)
- ▶ 세출결산액은 목별(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행사관련시설비) 지출액

❖ 연말지출비율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연도별				
	2016	2017	2018	2019	2020
세출결산액 (A)	30,484	54,764	33,800	22,062	18,556
연말 (11~12월) 지출원인행위액 (B)	9,134	7,311	3,747	3,918	8,411
비율(B/A)	29.96%	13.35%	11.09%	17.76%	45.33%

연말지출비율 연도별 변화



☞ '20년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전반적인 사업 진행 차질 및 계획 연기로 전년대비 연말지출 비율이 27.6% 증가하였습니다.

5-10. 금고 협력사업비 운영 현황

☐ 금고 협력사업비는 자치단체와 금고은행간 약정에 따라 금고지정에 대한 반대급부로 금고은행에서 자치단체에 용도 지정 없이 출연하는 현금으로, 그 성격은 일반재원(기타수입, 224-06)에 해당합니다. 우리 구의 2020회계연도 금고 협력사업비 운영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협력사업비의 2020년도 세입예산 편성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금고은행	약정기간	약정기간 총액	예산 편성액	실제 출연액	세입 처리액
합 계			240	60	60	60
제1금고	대구은행	'19.01.01~'22.12.31.	240	60	60	60

- ▶ 제1금고 : 일반회계 또는 일반회계를 포함한 특별회계, 기금 등을 소관하는 금고은행
 - ▶ 제2금고 등 : 일반회계를 제외한 특별회계, 기금 등을 소관하는 금고은행
 - ▶ '15.1.1부터 약정기간이 시작되는 경우 지방재정법 개정('14.5.28)에 따라 금고의 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음
- ※ 예산편성액 : 60백만원(당초), 세입처리액 : 60백만원('20. 1. 30.)

❖ 협력사업비의 2020년 세출예산 편성·집행내역은 없습니다.